

포상집의 기준

1990. 4. 26.



(사)대한근대5종연맹

포상심의 기준

1990년 4월 26일 제정

2008년 2월 12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11년 2월 23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12년 2월 6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13년 5월 21일 상임이사회 개정승인
2017년 3월 9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21년 1월 28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22년 2월 9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23년 2월 3일 정기이사회 개정승인
2025년 12월 11일 임시이사회 개정승인

1. 목적 : 근대5종 경기에 공이 있는 자를 심의함에 있어 정실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히 심의하여 선발, 포상할 수 있는 기준과 국제대회에서 입상 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다.

2. 근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장제3조(기능) 및 제3장(법제 및 포상)

3. 적용원칙

1) 정기유공자 포상 심의

① 적용시기 : 매년 1월 1일 - 년말까지

② 선정기준 : 근대5종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에 대한 배점부여

③ 포상시기 : 정기포상으로 년 1회 정기대의원총회 또는 회장배 대회시 포상

④ 대상 : 근대5종 선수 및 지도자, 관계자 등

⑤ 추천 및 심의대상 제외 : 경기상을 제외한 표창은 3년 이내에 포상 받은 경우, 동일한 상에 대한 추천 및 심의대상 제외

⑤-1 경기상 부문, 최우수·우수선수 선정시, 별표 제2호에 의거 선정<개정 20

25. 12. 11.>

⑤-2 동일팀이 최우수단체(우수단체 포함) 2년 연속 수상시 차기년도 3년 연속 최우수단체 또는 우수단체 선정하지 않으며, 차순위 팀에 승계하여 포상

⑤-3 최우수·우수단체상은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각부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단체를 우수단체상 후보로 한다.<신설 2022. 2. 9.><개정 2025. 12. 11.>

2) 국제대회 입상 선수 포상금 지급

- 별표 제1호에 의거 지급한다.

4. 정기 유공 포상의 종류 및 인원<전문개정 2022. 2. 9.><개정 2023. 2. 3.>
<개정 2025. 12. 11.>

구 分	근대5종		선 발 기 준	비 고
	인 원	부 상		
경 기 상	최우수선수	1명	100만원	별표 제2호에 의거, 다득점 대상 선발
	우수선수 (중, 고, 일반 <대학포함>)	남·여 각3명	각50만원	
	최우수단체	1팀	200만원	별표 제2호에 의거, 다득점 단체 선발
	우수단체 (중, 고, 일반 <대학포함>)	남·여 각3팀	각100만원	
	발전상	중, 고, 일반	각100만원	전년대비 경기력 및 선수 발굴 육성 우수단체
지 도 상	3명/각50만원		개인선수 및 단체팀을 지 도한 자로서 지도력이 탁 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	시·도 및 산하단체별 1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추천
심 판 상	3명/각50만원		공정한 심판으로 경기운영 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 여한 자	심판위원회 추천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추천
공 로 상	약 간 명		시·도연맹 회장 및 임원으 로서 근대5종 발전에 기여 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 정되는 자(1년 초과)	시·도 및 산하단체별 1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추천
연 구 상	약 간 명		근대5종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과 연구실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체육장학생	6명 (중 3, 고 3) 각 50만원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최우수시·도	1팀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 회 개최지로 선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추천
특별표창 (감사패)	약 간 명		근대5종 공로가 특별하다 고 인정되는 자, 경기력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 는 개인, 단체	※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추천

※ 시·도별 1인 추천 예외 : 각 부문별 추천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공
이 인정된 경우 추천인원에 대해 예외로 한다.

5. 선발방법

1) 개인 및 단체

각 시·도연맹은 본 연맹의 방침(매년 시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한다. 본 연맹은 시·도연맹 추천자를 대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공정히 심의 선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포상한다. 단, 경기상은 대회별 참가 성적별 순위를 점수로 별표 제2호를 적용하여 선발한다.<개정 2022. 2. 9.><개정 2025. 12. 11.>

6. 표창

각 시·도연맹에서 추천한 임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 선발

별표 제1호 국제대회 입상 선수 포상금 지급 기준

선 수<개정 2025. 12. 11.>

(금액단위 : 만원)

구 분	개 인			단 체(릴레이 포함)		
	금	은	동	금	은	동
올림픽	10,000	5,000	3,000	-	-	-
아시아경기대회	1,000	500	300	500	300	200
세계선수권대회	500	300	200	300	200	100
월드컵	입상선수 및 지도자 각 50만원(격려금)					
청소년선수권대회 및 청소년올림픽	입상선수 및 지도자 각 50만원(격려금)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입상선수 및 지도작 각 30만원(격려금)					

지도자

- 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선수의 최고 성적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도자 전원에게 균등 분할 지급.
단, 격려금(50만원)보다 적을 경우, 격려금(50만원) 대체 지급
- 월드컵, 아시아선수권대회, 청소년선수권대회(청소년올림픽 포함) : 격려금 50만원 지급
-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 격려금 30만원 지급

별표 제2호 국내 및 국제경기 환산기준표<개정 2023. 2. 3.><개정 2025. 12. 11.>

□ 국내대회

대회명	참가점수	5종			4종			3종			2종			비고
		1위	2위	3위										
회장배대회	10	10	7	5	8	5	3	6	4	2	4	2	1	단체, 릴레이 순위 점수는 개인순위 배점에서 50% 반영
문체부대회		10	7	5	8	5	3	6	4	2	4	2	1	
대한체육회장 배대회		10	7	5	8	5	3	6	4	2	4	2	1	
선수권대회		10	7	5	8	5	3	6	4	2	4	2	1	
전국체육대회		10	7	5	8	5	3	6	4	2	4	2	1	
전국소년체육 대회								6	4	2				

* 경기상(단체상) 점수 적용방법 : 각종별 순위 점수에서 50% 적용

- 선발팀 : 각종별 순위 점수(50%) ÷ 선발팀 수

▷ 선발팀 적용 예시(근대3종 1위 예시)

성명(소속)	계산	점수
김체육(00체종)		
박체육(00체종)	3점(6점의 50%) ÷ 2팀(선발팀 수)	(00체종) 1.5점
오체육(00종)		(00종) 1.5점
황체육(00종)		

□ 국제대회

대회명	참가점수	1위	2위	3위	비고	
올림픽	30	60	50	40	단체, 릴레이 순위 점수는 개인순위 배점에서 50% 반영	
아시아경기대회	20	45	35	25		
세계선수권대회	20	40	30	20		
월드컵(결승 포함)		30	20	15		
세계청소년 (U17, U19, U21)	10	20	15	10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청소년 (U17, U19, U21)						

별표 제3호 체육장학생 선정기준표<신설 2025. 12. 11.>

우선순위	기 준	비 고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선수	학생선수 중 동순위 발생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2순위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